

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‘의왕시’이라 한다)과 주제이민(이하 ‘제이민’이라 한다)은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‘중증장애인’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’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(협약의 원칙)

‘의왕시’와 ‘제이민’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.

제4조 (협약내용 및 기관역할)

협약기관은 장애인 훈련생의 업무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.

1. 의왕시(청계종합사회복지관)

- 의사소통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(또는 학습을 통하여 습득이 가능한) 중증장애인 발굴·의뢰
- 기타 취업연계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

2. 제이민

- 업무교육 및 취업연계
- 기타 교육(직장예절, 교양, 컴퓨터 활용 등) 및 심리상담(업무관련 또는 개인고충상담 등)

제5조 (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)

‘의왕시’와 ‘제이민’은 상호협력, 교류 등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6조 (협약의 해지)

‘의왕시’와 ‘제이민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의왕시(또는 의왕시민)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에 위해가 될 경우
2. 제4조에 명시된 협약 내용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제7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

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 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9조 (협약의 보관)

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월 30일

제이민
(주제이민 대표이사 김민아)
[Handwritten Signature]

의왕시장 김상돈
[Handwritten Signature]